



규정

산학협력단 운영규정


문서번호	TWP-A602
제정일자	2004. 03. 01.
개정일자	2014. 03. 24.
개정번호	3
페이지	1/6

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조직
- 제3장 위원회
- 제4장 산학협력위원회
- 부칙

작성부서	산학협력단	제정일자	2004. 03. 01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
직 책							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602
		제정일자	2004. 03. 01.
	산학협력단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4. 03. 24.
		개정번호	3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협력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협력단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며,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기관 간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·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조(사업)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대외연구비 계약, 진행, 관리
2. 간접연구경비 징수 및 관리
3. 산학협력단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
4.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
5. 특허·지적재산권 관리
6. 기술이전 및 사업화
7. 부설연구소 대외협력 지원 및 평가
8.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,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
9. 창업보육센터 관리·운영
10.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
11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

제2장 조직


제4조(단장의 자격) 단장은 교원 또는 행정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의 2(부단장의 자격) 부단장은 교원 또는 행정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<신설 2014.03.24.>

제5조(산학협력단) ① 산학협력단에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, 창업보육센터, 산업기술연구소를 둔다.

② 산학협력단에는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.

③ 산학협력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직원, 조교와 연구원(이하 “행정직원 등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A602	
		제정일자	2004. 03. 01.	
	산학협력단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4. 03. 24.	
		개정번호	3	페이지

④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또는 부설연구소에 임용된 행정직원 등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의2(부속기관의 업무분장) 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.

1. 산학협력사업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
6. 중소기업기술지도사업 계획 및 신청운영에 관한 사항
7. 산학연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산학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

②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.

1.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창업입주자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
3. 창업보육실 입주관리, 센터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
4. 창업유관기관과의 협조, 경영, 세무, 법률지원 사항
5.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결정 사항


③ 산업기술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.

1. 재정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2. 교내·외의 제반 연구 및 연구보고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
3. 외부기관 및 산업체의 수탁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
4. 산업기술 관련 연구에 관한 학술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
5. 국내·외 연구기관과의 기술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, 보급에 관한 사항
6. 관련 연구의 활동지원 및 연구소 논문집 발행에 관한 사항
7. 관련 학술활동 지원과 연구업적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

제3장 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처장, 사무처장, 정보전산센

	규정	문서번호	TWP-A602	
		제정일자	2004. 03. 01.	
	산학협력단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4. 03. 24.	
		개정번호	3	페이지

터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
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단의 기본운영정책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단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 및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4. 특허 및 지적재산권 제반 심의
5. 산학협력단의 해산 및 청산 절차
6. 그 밖에 산학협력단 및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8조(소집 및 의결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간사)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행정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사무처리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.

제4장 산학협력위원회


제10조(산학협력위원회) ① 이 대학과 산업체·정부 및 지방자치단체·연구기관 등과 유기적인 산·학·연·관 협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제5조 제1항의 부속기관의 장,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체의 대표와 광주시 기관 등의 관계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
③ 위원장, 당연직 위원 및 협력단 부속기관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협의사항)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산·학·연·관 협동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관리
2. 산·학·연·관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

	규정		문서번호	TWP-A602
			제정일자	2004. 03. 01.
	산학협력단 운영규정		개정일자	2014. 03. 24.
			개정번호	3

- 3. 산·학·연·관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구축
- 4. 그 밖에 산·학·연·관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

제12조(보칙)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